

# 감사보고서

##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예술대학교의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추계예술대학교의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3년 5월 10일

학교법인 추계학원

감사 이병준 (인)

감사 이희준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사무처장

성명 오영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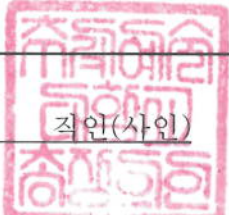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[별지 제1의2호 서식]

## 추계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피감사기관장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임 상 혁 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